

Chapter 1 Basic Law in China

제1장 중국법의 기본체계

I. 서론

2012년은 한중 수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이미 지난 8월에 한중간에 중요한 논의를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였으며, 아울러 이번 11월에 8일에 있을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인민대표대회¹⁾를 통하여 중국 경제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²⁾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2년에 중국과 수교한 이후에 단순 임가공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면서 산업 고도화를 평탄하게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그때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³⁾ 따라서 현재 중국의 변화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중국에 투자를 많이한 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의 경영환경을 따라가지 못하여 야반도주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날이 성장을 더해가는 중국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 상대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처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차제에 앞으로 다가올 중국 내의 변화에 발 맞추어 지난 20여 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차기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이해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II. 중국 법률에 대한 인식

1. 의의

- 1) 중국의 권력교체가 2012년 11월8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개최되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총서기가 물러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새로운 총서기로 선출된다. 마오쩌둥(毛澤東),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에 이은 '5세대 리더'의 등장이다. 시진핑으로의 완전한 권력이동(파워 시프트)은 내년 3월초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국가주석직을 넘겨받은 뒤 완성된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1당 지배 체제이며, 공산당의 최고 리더그룹인 정치국 상무위원이 정부 요직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11월8일 열리는 당대회에서 권력교체가 사실상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 2012년 10월 3일자.
- 2) 시진핑 체제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작업은 경제구조 개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는 '3통(三統)'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생산의 국내 통합'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고기술 핵심 부품을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조달하는 산업구조를 보여 왔으나 기술 수준이 높아진 지금 중국 기업은 부품도 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산과 시장의 통합이다. 중국 기업은 그동안 생산은 중국에서 하고, 시장은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내수 확대를 통해 소비도 국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출과 투자에 의존한 성장 패턴을 소비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좌변(轉變)'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는 제조와 금융의 통합 발전이다. 그동안 중국 금융업은 제조업 발전의 보조 수단 정도로 인식돼 왔으나 이제 금융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쟁력 높이기 위해 나섰다. 중앙일보, 2012년 8월 24일자.
- 3) 중국은 지금도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가. 양국간에는 현실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 1) 양국간 법률과 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 2) 양국간에는 고래로부터 전통이 달라 이질적인 관습과 법감정이 존재한다.
- 3) 따라서 양국간 법률의 충돌이 예상된다.
- 4)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나. 상호이해의 조절이 필요하다

- 1) 무역 등 거래행위의 다양한 모습이 존재 -- 일상생활이 곧 거래임
- 2) 거래시 반드시 중국인과의 접촉이 필요
- 3) 중국인의 관습과 법감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필요하다.
- 4)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윤추구로 공동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바람직한 방향

- 1)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인 현지 적응을 해야 한다.
- 2) 중국인의 법감정을 인식하고 행동예측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 3) 무지로 인한 위법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속한 후속처리를 해야 한다.
- 4) 중국에 투자시에 많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나라 자체가 매우 넓고 사람이 다양하므로 사후에 분쟁을 해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사전에 분쟁을 막을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 5) 봉사나 기여보다도 현실적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 등 경제적인 과실을 챙기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2. 중국법의 기본 체계

가. 3계층

중국의 법률체계는 憲法, 法律, 行政法規와 地方性法規 등 3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헌법은 중국의 國體와 政體, 民族政策, 사회 및 경제제도의 기본 원칙, 국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주요 국가기관의 권한과 직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나. 7대 부문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은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로 구분되며, 헌법관련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및 비송절차법 등 7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하고, 기타 법률은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다. 기본 법률로는 형사, 민사, 국가기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으로 민법통칙,

계약법, 물권법, 형법 등이 있고, 기타 법률로는 회사법(公司法), 노동법, 특허법 등이 있으며 규정, 결정, 조례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은 모두 법률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행정법규

行政法規는 행정기관인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하며, 헌법과 법률 다음으로 효력을 갖는다. 行政法規는 국가행정기관의 권한과 직책, 국가행정기관간의 관계, 사회조직, 기업과 국민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規定, 決定, 條例, 辦法, 暫行條例, 通知, 解釋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地方性法規는 시 및 직할시 등 지방국가기관이 제정하는데, 당해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고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및 등록하여야 한다.

라. 지방성법규

地方性法規는 일반지방성법규와 自治條例 및 單行條例로 구분된다. 일반지방성법규는 성, 직할시, 자치구 그리고 성, 자치구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대도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自治條例 및 單行條例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데, 그 해당 지역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특징을 잘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마. 부문규장과 지방정부규장

그리고 部門規章과 地方政府規章이 있다. 部門規章은 국무원 소속의 각 부, 각 위원회가 헌법, 법률 그리고 행정법규에 따라 그 권한 범위내에서 제정하는데, 實施細則, 暫行規定, 通知, 說明, 意見 解釋 등으로 명칭되고 있다. 地方政府規章은 성, 자치구, 직할시 그리고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대도시 지방정부가 제정하며 그 명칭은 部門規章과 거의 같다.

또한 특별행정구와 경제특구의 법규가 있다. 특별행정구의 기본법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1990년),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1993년) 등이 있다. 경제특구의 법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권한 위임에 근거하여 당해 경제특구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따라서 그 법률적 효력은 행정법규나 부문규장과는 다르다.

3. 한국법의 기본 체계

이에 대하여 한국의 법률체계는 헌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법률과 명령, 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은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규범으로 국회에서 제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한다.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제정된 법령으로 대통령이 제정하는 大統領令과 국무총리가 제정하는 總理令 및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部令으로 나뉘는데 대통령령을 시행령,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관이 제정하는 총리령 및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령은 중국의 행정법규에 해당하고, 시행규칙은 중국의 부문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규칙으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이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되는 자치법규로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

4. 중국의 통상 및 경제관련 법률

여느 국가는 물론 아직 법률부문에서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장개혁의 중요한 3대 법률은 물권법, 기업과산법, 반독점법이다.